

대법원 2022. 5. 12 선고 2022다2006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6. 1. 22 선고 2025재가소6 판결

대법원 2022. 5. 12 선고 2022다200690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0나42997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1. 25 선고 2019가소30656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, 피상고인 B 주식회사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2. 2. 선고 2020나42997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오경미, 대법관 박정화, 주 심 대법관 김선수, 대법관 노태악